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6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0년 8월 19일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0년 9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상정·의결(2020. 9. 16.)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기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강서구 공항대로 561, 지하1층(염창동)	238㎡(72평)	16명

- 위탁사무 내용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진단 및 기획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 알코올중독 관리 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홍보, 교육,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성화
- 정신보건사업 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위탁기간: 5년(2021. 1. 1.~2025.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 소요예산(2020년도 기준): 838,492천원(국비3%, 시비47%, 구비 50%)

2) 추진일정

- 2020. 9월: 위탁업체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0. 10월: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20. 11월: 수탁기관 평가심사
- 2020. 12월: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부칙 제3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정우숙)

- 본 동의안은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중독관리 체계 구축 등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3월 설립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1)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자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해전문성을 갖추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다만, 위탁체 선정에 있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 업무의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구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¹⁾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연혁(4P) 참조

□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연혁

연번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비고
1	_	1997.3.~2000.3.31.	연세의료원	1997.3. 최초위탁(가양7복지관 内)1998.3. 강사구보건소 자해층으로 이전
2	2회	2000.4.1.~2000.12.31. 2001.1.30.~2001.12.31.	김병후정신과	· 1년 단위 계약, 서울시와 협약체결
3	6회	2002.2.19. ~ 2007.12.31.	사는기쁨정신과	 1년 단위 계약, 2004년까지 서울시 - 센터 협약 2005년부터 강서구청-정신보건센터 협약체결
4 재위틱		2008.1.1.~2008.12.31.	명지의료재단	· 공개모집, 1년 위탁
		2009.1.1.~2011.12.31.		· 재계약 3년
	재위탁	2012.1.1.~2014.12.31.		· 공개모집, 3년 위탁
		2015.1.1.~2017.12.31.	(명지병원)	· 공개모집, 3년 위탁
		2018.1.1.~2020.12.31.		· 재계약 3년 (2017.9.29. 구의회 재위탁 보고)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참고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있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 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u>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u> 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 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정신건강증진시설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 2. 노인 ·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 3.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 4. 교통,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 5. 문화 · 예술 · 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 6. 노동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 7. 교육 · 교양 · 체육 · 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부칙 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